



CP도입과 운영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 579-3291 ksrha@esak.or.kr

공정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의 도입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가장 큰 의의는 시장참여자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최일선 대열에 서서 앞장을 선다는데에 있다. 종래에는 정부가 강제적인 법 집행의 주체이자 단속자였고, 기업은 피동적인 법의 순응자이자 피단속 객체로 자리매김했었다. 그러나 기업내의 CP도입과 확산을 계기로 이러한 구태의연한 구도를 탈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결국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강제적인 관련법의 집행을 위주로 하는 정책의 운용방식을 일대 전환하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규범의 준수를 적극 추장하고 유도하여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도적인 인센티브제도(incentives)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CP도입을 계기로 경쟁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나 이의사후 시정보다는 차라리 교육, 상담, 홍보와 자율분쟁조정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당한 거래사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부당한 표시와 광고의 관행 따위와 같은 위반 사례가 빈번했던 일반 불공정행위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사후 제재조치보다 바람직한 사전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쟁법 위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켜 법적 위험(legal risk)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고객 및 사업동반자(business partners)의 불만족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법의 준법관행이 체질화된 기업일수록 고객과 소비자를 동시에 의하여 헌신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개된 시장경쟁을 통해 검증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는 등 기업으로서도 바람직한 장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CP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그

역사는 매우 일천하나, 2003년 3월 현재 77개 기업이 CP를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대개 긍정적인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 백화점 및 각종 유통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CP를 도입한 기업이 다투어 확산되고 있는 바람직한 추세에 있다. 그리고 CP를 도입한 기업들은 핵심적인 구성요건의 대부분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예방은 물론 재발방지 시스템을 기업내부에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뚜렷하고 또한 전망도 밝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측면도 있다. CP를 도입하는 기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견기업의 CP도입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또 사업자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관행상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지 못한 업종이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CP가 가히 필수적이며 따라서 그 시급한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준법질서나 윤리경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아직 경쟁친화적인 경영 차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CP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경쟁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legal risk)을 회피할 목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윤리경영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경쟁친화적인 경영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 프로그램이 대부분 하향(Top-Down)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정작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대주주 또는 대기업집단의 총수의 불공정한 행위결정이나 개입을 중단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는 차단장치가 가동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실제로 영업일선의 종사자들은 교육과 홍보, 감독시스템을 통해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사주(owner)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최고경영진의 의식은 구태의연하게 전근대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들의 마인드(mind)의 변화가 아직까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CP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 우수기업 가운데에서도 대주주인 사주나 최고경영자가 개입된 불공정행위의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자본조달, 기업지배구조, 분식(粉飾)회계, 내부거래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

